

접수번호	광고사전자유통심의신청서				처리기간
01-01-P-1500219					7일
신청자명	(주)하이라이프	대표자	전정호	사업자등록번호	605-86-28753
신청자주소	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부산진구 중앙대로909번길 11(양정동)			연락처	담당자명: 김윤희
					연락처: 010-7224-3826
					팩스: 051-951-7799
광고 상품명	당심	광고주명	하이라이프	광고매체	신문, 잡지, 인터넷, 기타 (A안)
대행사명	네오라인	제작자명	네오라인	심의구분	초심 O 수정심
검토의견					
첨부 광고물 광고적합 의견임.					
변경내용					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15년 7월 7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15-P1-06-3	
	기타		

※ 주의사항은 뒷장에 첨부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광고 이미지

BORYUNG
보령수연주
 www.boryung365.com NAVER 보령 당심 ▼

아이구~ 몸이 여~앵~~ 예전같지 않네! 날마다 관리하세요? **당심** 이 큰 힘이 됩니다

돼지감자환 ‘**당심**’

돼지감이 좋다! 아무거나 드실 수 없겠지요?
고객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보령 돼지감자환 당심!
품질도 가격도 역시!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!

돼지감자

돼지감자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총량의 구분과 15~30%의 만수량은, 노른자와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과 미량인 섬유를 구성되어 있다.

보령의 식물이 만수무답을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는 곳과는 달리, 돼지감자는 탄수화물의 형태만을 이용한다(Inulin)이라는 화합물형태로 일로 저장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. 이렇듯만 돼지감자 원종들의 14~99%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으며, 이는 돼지감자 건조중량(dry weight)에 약 5%에 해당된다.

이눌린(inulin) (익당류)

이눌린은 국산공식 식물인 판타미(Pantami)와 양파뿌리, 알팔라 뿌리, 사과나무 잎 및 돼지 감자에 함유아드상으로 존재하는 저당 다당류

의 알콜으로 만든 텍스트를 통하여 많이 알려 지었다.

이눌린은 우리몸의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는 단소화성식이섬유라는 특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착각하여 섭취에도 빈번히 어 용되고 있다.

돼지감자환 ‘당심’

가죽 테스트에서도 널리 알려진 돼지감자는 물론 수분과 이눌린이 풍부하기 때문 카 달미는 지금까지 대항문 제스트 한데로 많이 보급되어 왔다. 그러나 유럽에서 일본처럼 데온 에 반기되었으니 같은 보령수연주에서 출시한 “당심”은 드러내 공명을 이용하여 환자로 만 들어져 유래와 정확히 간헐적이다.

또한 가루도 제공하며 정제강자가 필요한 환자나 활동자에게 관동증이 될 것이다.

**“보령 당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.
하루 한포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바꿔보세요!!”**

돼지감자의 건강함을 믿을 수 있는 보령 ‘당심’이 드립니다!

보령 제약 그룹의 종합 건강관리 전문기업

보령수연주는 ‘민간건강에 관한 이야기’ 기사를 위해 19K3년에 창립 안 보령제약의 일괄변해 계약사입니다. 가족회 되는 고명화로 건강을 위한 삶이 잘 향상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저희 보령수연 주 는 민영화된 우수 기업 체제를 기반으로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. 저희 보 령은 그동안의 국민의 믿음들 가장 커다란 자신사로 성장하고 앞으로 도 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앞장서려고 합니다.

문의처 : ㈜비엔디아이 상담전화 **080-830-3300**

보령 돼지감자환 당심(세븐 및 합원)

특징점 : 48x12x3cm(50g) x 20개 / 인형체형상 30x10x10 개 신, 솔솔발달(국내산) 인형체형상(일본)(국내산), 씨알밀도 조율안정(한국산) 등... **재용기간 :** 4월 ~ 10월(30일)

배송방법 : 1봉 7~9개 / 박 1박 10개 송출방 법과 포장법 해설서를 제공합니다.

특별보급 300세트 한정!!

• 1박스(33개입) ₩ 99,000원 • 2박스(66개입) ₩ 179,000원

기 타		면 번호	2
-----	--	------	---

심 의 의 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15년 7월 7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15-P1-06-3	
	기타		

※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

- 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② 원하실 경우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<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전검토필 심의번호> 문구로 한정하며, 기구 로고 필요 시 사무처에 별도 문의바랍니다.
- 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은 불허합니다.
-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- ⑤ 필증을 위·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.
-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(02-2144-4300/4304)로 연락 바랍니다.